

첨부 1

긴급복구 협력업체 서류 체크리스트

연 번	제출 서류	비 고	여 부
1	긴급복구 협력업체 관리대장	붙임 2	
2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붙임 4	
3	전문공사업종 신고필증 (건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① 전라남도 나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②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위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4	재직증명서		
5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6	회원수첩 사본	- 국가기술자격증 회원수첩 - 건설기술경력증 회원수첩	
7	국민연금 가입증명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명부	
8	건설장비 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 건설기계 등록증 · 검사증 - 자동차 등록증	
9	장비 보유현황	- 사진대지	
10	(공사실적) 최근 3년간 상수도공사실적자료	- 세금계산서 / 발주처 확인서 등 * 상수도공사 실적만 인정	
11	(신용도) 최근 1개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결산공고된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 자본금, 부채비율 심사	
12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붙임 7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8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1. 지정목적 : K-water 나주수도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나주시 지방상수도 시설의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 가. 지정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나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 다. K-water 나주수도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6. 8. 12(수) 09:00 ~ 2026. 8. 18(화) 18:00
 -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6. 8. 19(수) 09:00 ~ 2026. 8. 28(금) 18:00
 -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 배부처 : K-water 홈페이지(새소식 - 게시판)
 - ※ 접수처 : K-water 나주수도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 라.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람
 -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6. 9. 1(화) (업체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평가점수 상위 1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 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9. 8. 10(협약서 명기)
6. 협력업체 운영
 -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나주수도지사로 문의
 - 담당자 : 손희동 사원(☎061-339-3415)
 - 주 소 : 전남 나주시 상야4길 22 (K-water 나주수도지사)



나주수도지사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귀 공사의 “관로시설 긴급복구 협력업체”로 지정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사명			
2.대표자			
3.전문공사업종			
4.주소			
5.전화번호			
6.회사설립년도			
7.해당부문 종사기간			
8.기술인력보유현황			
기술자	인원수	비고	
.책임기술자		-	
.배관공		-	
.인부		-	
.계			
9. 장비보유 현황			
장비명	규격	대수	비고
※장비보유 현황은 상세하게 기술(등록증 사본 첨부) ※전문공사업종 신고필증 사본, 회원수첩 사본 첨부 ※기술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사본 첨부 ※기타 등록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등록업체 평가에 필요한 자료 첨부 - 최근 3년간 상수도공사실적자료(세금계산서,발주처 확인서 등) - 전년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없는 업체는 세금계산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자료 첨부			

붙임 3

긴급복구 협력업체 신청 자격요건

- ☐ 지정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나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 ☐ 아래 기본인력 및 기본장비를 보유한 업체

☐ 기본인력

기 술 자 명	단 위	인 원	비 고
책임기술자	인	1인 이상	토목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소지자

☐ 기본장비

장 비 명	단 위	규 격	수 량	비고
백호	대	0.12m ³	1이상	미보유시 임대계약
발전기	대	15kW	1이상	미보유시 임대계약
양수펌프	대	2"이상	3이상	
착암기	대	컴프레사	1이상	
콘크리트컷터	대	포장절단용	1이상	
관절단기	대		1이상	
플레이트콤팩터	대	1.5ton	1이상	
작업차량	대	트럭 (1톤 이상)	1이상	
통신장비	대	휴대폰	1이상	
기타 장비	식	소모품	1	
안전장구	개	안전헬스	10이상	
	식	안전모 등	1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업체능력	공사 실적	최근 3년간 상수도공사 실적합계액	○ 평가방법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50																																
	신용도	재정상태 견실도	1) 자본금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5																																
			2) 부채비율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5																																
2.인력보유	적정 기술인력 보유현황	당해사업에 필요한 적정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원수에 기술자격계수를 곱하여 산출 <table><thead><tr><th>보유인력</th><th>기술자격계수</th></tr></thead><tbody><tr><td>- 토목기사1급 또는 중급 기술자 이상</td><td>4점</td></tr><tr><td>- 토목산업기사 또는 초급 기술자</td><td>3점</td></tr><tr><td>- 배관기능공</td><td>2점</td></tr><tr><td>- 작업인부</td><td>1점</td></tr></tbody></table>	보유인력	기술자격계수	- 토목기사1급 또는 중급 기술자 이상	4점	- 토목산업기사 또는 초급 기술자	3점	- 배관기능공	2점	- 작업인부	1점	20																						
보유인력	기술자격계수																																			
- 토목기사1급 또는 중급 기술자 이상	4점																																			
- 토목산업기사 또는 초급 기술자	3점																																			
- 배관기능공	2점																																			
- 작업인부	1점																																			
3.장비보유	적정 장비 보유현황	당해사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보유현황	○ 보유장비수에 계수를 곱하여 산출 <table><thead><tr><th>보유장비</th><th>규격</th><th>계수</th><th>최대</th></tr></thead><tbody><tr><td>- 백호</td><td>0.12m³이상</td><td>3점</td><td>3점</td></tr><tr><td>- 발전기</td><td>15kW 이상</td><td>2점</td><td>8점</td></tr><tr><td>- 작업차(트럭)</td><td>1톤 이상</td><td>2점</td><td>4점</td></tr><tr><td>- 콘크리트 커터</td><td>포장절단용</td><td>2점</td><td>2점</td></tr><tr><td>- 플레이트콤팩트</td><td>1.5ton</td><td>2점</td><td>2점</td></tr><tr><td>- 양수기</td><td>2"이상</td><td>1점</td><td>5점</td></tr><tr><td>- 무단수천공기</td><td></td><td>1점</td><td>1점</td></tr></tbody></table>	보유장비	규격	계수	최대	- 백호	0.12m ³ 이상	3점	3점	- 발전기	15kW 이상	2점	8점	- 작업차(트럭)	1톤 이상	2점	4점	- 콘크리트 커터	포장절단용	2점	2점	- 플레이트콤팩트	1.5ton	2점	2점	- 양수기	2"이상	1점	5점	- 무단수천공기		1점	1점	20
보유장비	규격	계수	최대																																	
- 백호	0.12m ³ 이상	3점	3점																																	
- 발전기	15kW 이상	2점	8점																																	
- 작업차(트럭)	1톤 이상	2점	4점																																	
- 콘크리트 커터	포장절단용	2점	2점																																	
- 플레이트콤팩트	1.5ton	2점	2점																																	
- 양수기	2"이상	1점	5점																																	
- 무단수천공기		1점	1점																																	
계				100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등급별 배 분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업체수																				배점비 (%)	배점별 점수분포 현황		
등급	배분율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점		10점	50점	
수	10	-	-	-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100	5.0	10	50	
우	20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4	4	4	90	4.5	9	45	
미	40	1	1	2	1	2	2	2	3	4	5	6	5	6	6	6	7	7	8	8	80	4.0	8	40	
양	20	-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70	3.5	7	35	
가	10	-	-	-	1	1	1	1	1	1	1	1	1	1	1	2	2	1	1	2	60	3.0	6	30	

협력업체 관리대장

1.회사명			
2.대표자			
3.전문공사업종			
4.주소			
5.전화번호			
6.회사설립년도			
7.해당부문 종사기간			
8.기술인력보유현황			
기술자	인원수	비고	
. 책임기술자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계		- - - -	
9. 장비보유 현황			
장비명	규격	대수	비고
10.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가감점 현황			
내 용	가감점	관련 근거	
※등록업체 관련서류 첨부			

나주시 지방상수도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서(안)

제1조 (목 적) 이 협약은 나주시 지방상수도에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장 (이하 “K-water”라 한다)과 ○○ 사장(이하 “협력업체”이라 한다) 간에 긴급복구공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사고”란 K-water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능적 회복이 일반적인 점검정비 또는 단순 보수작업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긴급복구공사”란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수도사고가 아닌 경우에 긴급히 시행하는 소규모 긴급공사를 포함한다.
3. “소규모 긴급공사”란 수도사고 외 민원관리, 안전관리, 관망관리 등을 위해 긴급 조치 및 지자체의 긴급요청에 의해 시행되는 공사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4. “긴급복구체제”란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가 신속하게 긴급복구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유지해야 할 인력·장비·자재 등의 최소 요건으로서 협력업체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고가 발생하여 K-water가 협력업체에게 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지시한 경우
2. 협력업체의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K-water가 각종 현황을 확인하거나 협력업체를 지도하는 경우

제4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단,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에 대한 재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본 협약기간 종료일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긴급복구체제의 유지 등)

- ① 협력업체는 제4조에서 정한 협약기간내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K-water는 협력업체가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다.
- ② 협력업체는 인력·장비·자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K-water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에 사용될 주요자재에 대하여 사전에 K-water와 협의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 ④ 협력업체는 제1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도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신속히 긴급복구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⑤ K-water는 제2항의 사유 발생으로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협력업체의 긴급복구공사 시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K-water는 수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긴급통신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조 (협력업체간 작업 순번)

- ① K-water는 협력업체 지정공고에서 정한 협력업체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협력업체간 작업 순번을 정하고 그 순번에 따라 협력업체에 작업을 의뢰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모든 협력업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긴급복구공사 순서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고로 수용가에 단수가 발생하였거나 단수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K-water는 연락체계유지, 이동거리, 장비 및 자재 확보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다른 협력업체로 하여금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작업의뢰 및 응급조치 등)

- ① K-water는 수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소규모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에게 즉시 긴급복구공사의 시행을 요청하면서 그에 따른 작업의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작업의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협력업체는 제1항의 요청을 받는 즉시 가옥침수, 구조물 손괴, 교통마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도수로·안전철타·조명설비·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협력업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신속하게 긴급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 (긴급복구공사의 시행)

- ①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 시 교통안내원 등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협력업체는 인근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등 긴급복구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협력업체는 작업상황, 장비 및 인력투입, 자재수급상황 등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정산시 처리신고필증,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물 인계서 등 해당 서류를 K-water에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협력업체는 긴급복구 공사 과정에서 시설물 등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K-water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수급인은 긴급복구공사 시 안전조치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K-water의 조치사항) K-water는 긴급복구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승인·협조·대외홍보 등 지원을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시공 등의 제재)

- ① 협력업체가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할 때 부적절한 공법을 적용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 K-water는 협력업체에게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긴급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K-water는 협력업체에게 민원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K-water는 긴급복구 공사시 공사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민원예방 등을 위해 협력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협력업체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K-water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K-water는 협력업체에게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준공신고서 등 제출)

- ① 협력업체는 월별(또는 분기별)로 긴급복구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시공 관련 사진 및 경찰관서 신고사항 등이 첨부된 준공(정산)신고서를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K-water와 협력업체가 합의한 경우 준공(정산)신고서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협력업체는 제1항의 준공(정산)신고서에 작업의뢰건별 복구공사 완료보고서, 긴급복구공사에 활용된 기술 및 변경도면과 관련된 자료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 ① K-water는 협력업체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준공(정산)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K-water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협력업체의 대가지급청구서(K-water가 정한 긴급복구공사 품셈에 기초한 것을 말한다)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K-water는 제2항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협력업체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지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 ① 협력업체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긴급복구공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1.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 3년
- ② 협력업체는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긴급복구공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증권으로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 구조물 : 5%
 2. 상하수도 관로 : 3%
- ③ 협력업체는 하자보수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협력업체가 제3항에 따른 K-water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K-water는 협력업체에게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협력업체가 제3항의 보수작업 불이행으로 민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K-water는 협력업체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사고 등의 책임)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 및 하자보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경고카드 등의 발급)

- ① K-water는 협력업체가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또는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카드를 발급하고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K-water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 회피로 민원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제16조 제1항부터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카드를 발급하고,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고·주의카드를 받은 협력업체는 별표 2에 따라 소규모 긴급공사가 제한된다.

제16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 ① K-water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협력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력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협력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이상 늦게 공사현장에 도착한 경우가 2회 이상일 때
 4. 협력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이상 늦게 긴급복구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2회 이상일 때
 5. 협력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폐기물을 무단폐기 한 경우가 1회 이상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 범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가 3회 이상일 때
 6. 그 밖의 사정으로 K-water와 협력업체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② K-water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협력업체는 제2항의 통지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K-water는 이의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 (협력업체 등록 취소)

- ① 협력업체가 별표 3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다음날부터 협력업체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협력업체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한 달일 이내에 제11조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협력업체는 공사시행을 즉각 중단하며, K-water는 해당 공사를 다른 협력업체에게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K-water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협력업체가 해당 긴급복구 공사를 준공 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회 운영)

- ① K-water는 신공법을 소개하거나 협력업체 간에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② 협약기간 중 모든 협력업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긴급복구공사 순서를 심사점수순서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협약의 변경) K-water와 협력업체는 서면합의로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K-water와 협력업체가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K-water와 협력업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월 00일

K-water 나 주 수 도 지 사 장 0 0 0 (인)

협력업체 0 0 0 0 대표이사 0 0 0 (인)

주 식 회 사 0 0

수 신 :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공사” 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1부 끝.

주 식 회 사 0 0

시행 00 2000-00 호 (2000. 0. 00 접수)

우 00000 전남 나주시 00면 00길 00

전화 061)000-0000 / FAX 061)000-0000 / (E-Mail : 000000@naver.com /공개)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공사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0000. 00.

회사명(로고)

제출문

귀사의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공사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름 성명 성

업체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목 차

I. 위험성평가 목적	1
II. 위험성평가 개요	1
III. 위험성평가 방법	2
IV. 위험성평가 결과	4

I

위험성평가 목적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하여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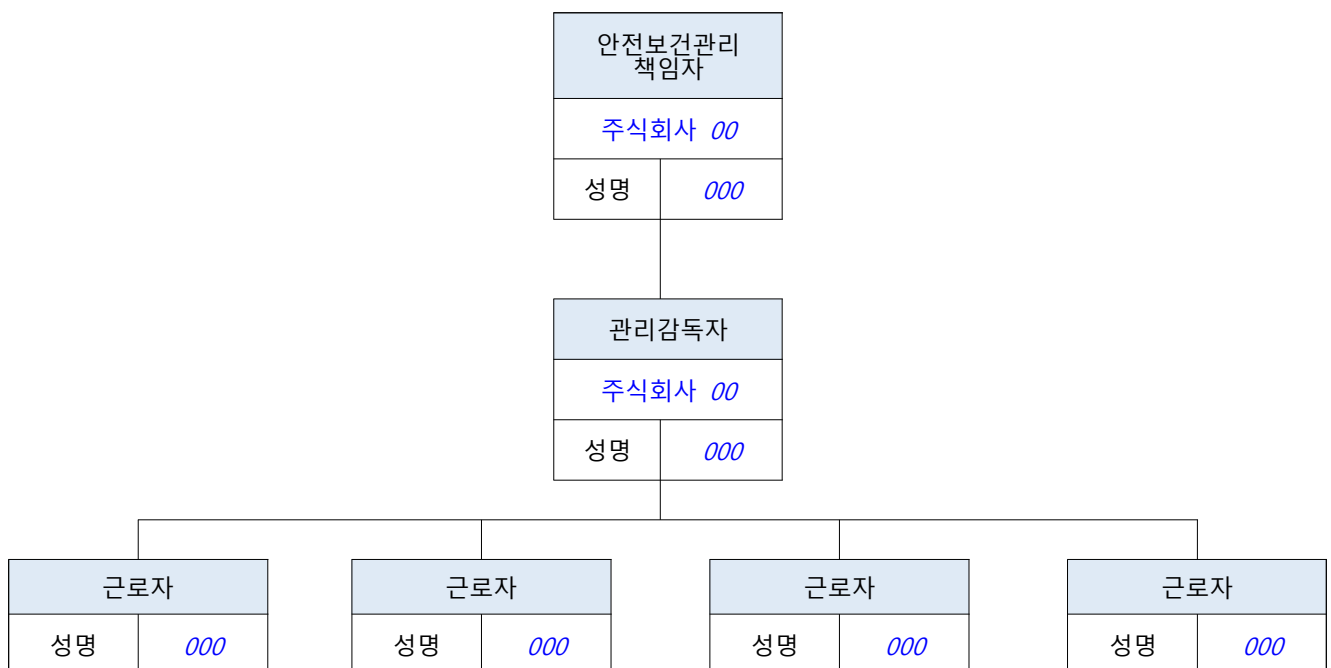
II

위험성평가 개요

□ 평가기간 00. 00. 00. ~ 00. 00. 00.

구 분	주요내용	일 시
1단계 : 사전준비	평가대상 및 범위 확정, 공정(작업) 선정	26. 00. 00
2단계 : 유해요인 파악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26. 00. 00
3단계 : 위험성 추정	위험요인 심사·정량화의 단계 위험성=사고발생 가능성(빈도)×사고결과 중대성(강도)	26. 00. 00
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 결과에 따라 위험성 결정	26. 00. 00
5단계 : 감소대책 실행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시행으로 위험성 감소	26. 00. 00

□ 위험성평가 조직도



□ 평가방법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 각 사업장의 공정과 설비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

종 류	설 명
사업장 점검에 의한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하는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의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나 작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중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text{위험성(Risk)} = \text{사고발생의 가능성} \times \text{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1>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 능 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접근, 위험 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표 2>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재해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또는 질병
대	장해 발생	3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 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병원 치료	2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장기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표 3>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최대	대	중	소
	단계	4	3	2	1
가 능 성 (빈 도)	단계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허용 가능 여부
1~3	매우 낮음	·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필요에 따라 개선	허용 가능
4~6	낮음	·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	· 유해·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계획적으로 개선	허용 불가능
9~12	약간 높음	· 정비·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가급적 빨리 개선	
15	높음	·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실시하고 정비·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신속하게 개선	
16~20	매우 높음	· 즉시 작업 중지(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즉시 개선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

IV

위험성평가 결과

사업장명 : 주식회사 00			위험성평가					작성일 : 2000 00 00.				
◇ 공정대분류 : 현장작업					◇ 세분류 : 긴급복구업무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기계(설비)적 요인	장비이동시 작업자와의 충돌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00조 (접촉 방지)	장비신호수 배치	3	2	6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장비신호수 필수 배치	4	'26.7	26.7	000
2	작업환경 요인	굴착작업시 지반붕괴 또는 토석낙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39조 (토석붕괴 위험 방지)	안전모 착용	0	0	0	낙 하 방 지 물 사전제거 및 여건에 따라 흙막이 설치	0	000	000	000
3	작업환경 요인	굴착시 지하매설물 파손에 따른 근로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42조 (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굴착전 지장물 협의	0	0	0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탐침봉 등을 통한 사전확인 시행	0	000	000	000
4	기계(설비)적 요인	도로 절삭 및 배관작업시 기계사용에 따른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 101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 예방장치)	톱날 덮개 설치	0	0	0	절삭 및 절단작 업시 톱날 점검 및 고정핀 확인	0	000	000	000
5	기계(설비)적 요인	장비 이동 시 신호수(장비, 교통)와의 충돌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00조 (접촉 방지)	장비 이동 전 시야 확보 및 클락션으로 이동 알람	0	0	0	사전 안전교육 시행	0	000	000	000
6	작업환경 요인	중량물 이동 시 낙하에 의한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7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슬링바 고정 및 두 줄 걸기	0	0	0	사전 슬링바 상태 점검 및 고정상태 확인	0	000	000	000

첨부 1

위험성평가 회의록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회 의 일 시	0000년 00월 00일					
회 의 장 소	000 사무실					
참 석 자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이사	000	자필서명	과장	000	자필서명
	과장	000	자필서명	과장	000	자필서명
	과장	000	자필서명			
회 의 내 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사 진 대 지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첨부 2

유해·위험요인 분류표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의 유해·위험요인 분류

번호	분류	유해위험요인 파악		
1	기계(설비)적 요인	1.1 끼임(감김)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위험 부분
		1.4 충돌위험 부분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1.6 추락위험 부분 (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2.2 아크	2.3 정전기
		2.4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흠
		3.4 액체·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선	3.8 화재/폭발 위험	3.9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 (GMO)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5.1 소음	5.2 초음파·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 (휴먼에러)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작업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동작
		5.10 작업(조작)도구	5.11 기후/고온/한랭	
6	작업환경 요인	6.1 기후/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6.7 화상	6.8 작업(조작) 도구	

주 식 회 사 0 0

수 신 :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공사” 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주 식 회 사 0 0

시행 00 2000-00 호 (2000. 0. 00 접수)

우 00000 전남 나주시 00면 00길 00

전화 061)000-0000 / FAx 061)000-0000 / (E-Mail : 000000@naver.com /공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소규모 양식)》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공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사명(로고)

제출문

귀사의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공사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가
다

업체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I

목적 및 개요

1. 목적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2. 개요

- ☐ 사 업 명 :
- ☐ 사업기간 :
- ☐ 위 치 :
- ☐ 사 업 비 :
- ☐ 주요내용 :

3. 조직구성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II

세 부 계 획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대상 : *작업인원 00명 또는 시설 00개소*

☐ 집행내역

구 분	구매수량	사용목적
<i>교통안전 표지판</i>	<i>00개</i>	<i>차량 등 작업구역 통제</i>
<i>안전모</i>	<i>00개</i>	<i>근로자 보호구 지급</i>
<i>안전화</i>	<i>00개</i>	<i>근로자 보호구 지급</i>
....		

※ 작성방법

(1)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안전보호구 등의 구매계획을 금액과 함께 작성

(2) 사용항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유해·위험요인 조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구분	예방대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 부착/ 안전수칙 게시	법정 안전검사 실시여부 (2년에 1회)	기타대책 (예방활동)
기계·기구·설비	<i>연삭기 (그라인더)</i>						
	<i>지게차, 하역운반기계</i>						
	<i>이동식 크레인</i>						
	<i>백호우</i>	✓	✓	✓			✓
	<i>고소작업대 (시저형)</i>						✓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 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유해·위험물질	<i>페인트, 신나</i>						
	<i>유기용제 및 증기</i>						
	<i>기타 유해·위험물질 (경유)</i>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위험성평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공사명 :

업체명 :

작업공정명 :			위험성평가									평가일시 :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개선 담당자
위험분류	제안자 (성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기계적요인	○○○	고소작업대 사용 중 탑승자가상부 배관 등에 끼임사고 위험		·근로자 안전교육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3	4	12	·고소작업대 합척방지봉 설치 ·작업전 설비 점검 실시	1	4	4	○○○	○○○	○○○
작업특성요인	○○○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위험		·근로자 안전교육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4	4	16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준수 ·작업전 허가서 작성·승인 후 근로자 출입 ·환기 철저 및 구조장비 비치	2	3	6	○○○	○○○	○○○

3.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관리

☐ 관리감독자 등 법정안전교육 실적

구 분	대 상	교육내용	시 간	교육여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
채용 시 교육				
정기 교육				
.....				

☐ 일간 안전교육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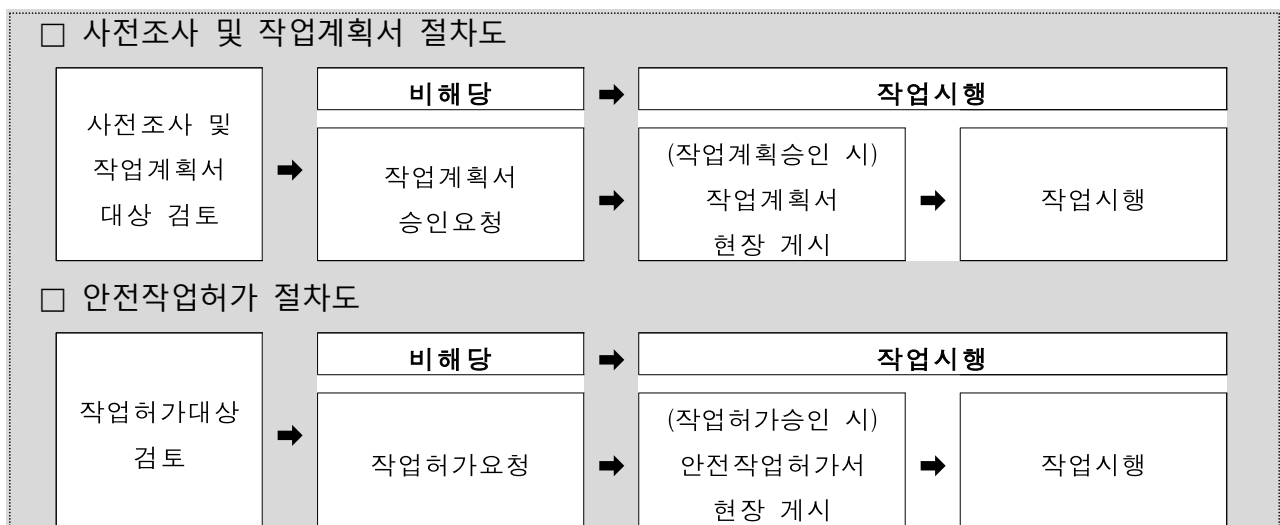
구 분	대 상	교육내용	비 고
공정별 안전교육	해당 공정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의 이행 * 참고자료1 활용

☐ 대상작업 : 밀폐공간작업(침전지 청소)

☐ 현장일정 : 00.00.00 ~ 00.00.00

☐ 이행계획 : 현장작업 전 밀폐공간 내 가스농도 측정, 환기방안 수립 후 작업허가서 작성, 감독원 제출



5.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행

☐ 회의준비 :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 내 사건사고 확인, 안전지침 등

☐ 이행계획 : 현장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예방대책을 확인

단 계	내 용
① 준비	TBM 전달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 ① 위험성평가 결과 ② 사고보고서 ③ 안전작업 지침 및 규정
② 실행	1.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과도한 음주, 37℃ 이상 체온, 약물 복용 여부 등 이상유무 2.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 작업절차 / 대책 공유·전달 *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작업자의 의견발표 적극 권장 3. 작업자가 TBM 내용 숙지하였는지 확인 * 외국인 포함 시 통·번역 등 효과적인 전달 방안 마련 4. 위험요인, 불안정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확인 ① 멈춘다(Stop) → ② 확인한다(Look) → ③ 평가한다(Assess) → ④ 관리한다(Manage)
③ 환류	1.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2.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보관 3.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

6. 신호 및 연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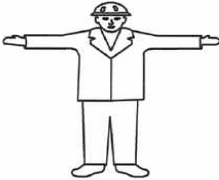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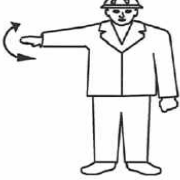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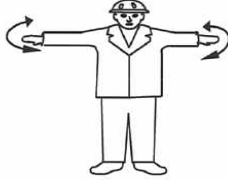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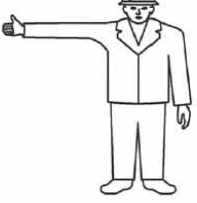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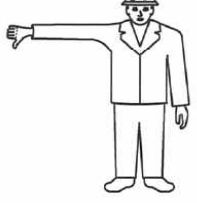
☐ 연락체계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비고
K-water OO지사	000 000	000-0000-0000	
OO지방고용노동청	000	000-0000-0000	
OO소방서	000	000-0000-0000	
OO경찰서	000	000-0000-0000	
OO병원	000	000-0000-0000	
.....			

☐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

- (대상)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 (목적)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한 후, 타 근로자가 그 기계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방법)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①~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 신호체계

 작업 시작 두 팔을 수평으로 뻗고 손바닥은 펴서 정면을 향하게 한다.	 멈춤(보통 멈춤) 한 팔을 수평으로 뻗고서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은 수평을 유지하며 앞뒤로 움직인다.	 비상 멈춤(긴급 멈춤) 두 팔을 수평으로 뻗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은 수평을 유지하며 앞뒤로 움직인다.
 미동 혹은 최저속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원을 그리듯 문지른다. 이 신호 후에 기타 해당 수신호를 적용한다.	 포크(붐) 폭 확장 양손을 앞쪽으로 뻗고 (주먹을 쥔 상태) 엄지손가락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유지한다.	 포크(붐) 축소 양손을 앞쪽으로 뻗고 (주먹을 쥔 상태) 엄지손가락을 마주 보는 방향으로 유지한다.
 주행 방향 표시 한 팔을 수평으로 뻗으며 손은 펴고,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게 하여 원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주행(멀어지는 방향) 두 팔을 앞쪽으로 펴서 벌리고 두 손은 펴서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두 팔뚝을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인다.	 주행(가까워지는 방향) 두 팔을 앞쪽으로 펴서 벌리고 두 손은 펴서 손바닥을 위쪽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두 팔뚝을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인다.
 포크(붐) 올리기 한 팔을 수평으로 뻗고서 엄지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한다.	 포크(붐) 내리기 한쪽 팔을 수평으로 뻗고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작업 중지 양손을 신체 앞쪽 가슴 높이에서 모으고 움켜쥜다.

Ⅲ

산업재해 현황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해당없음	최근 3년간

2. 산업재해 내용(발생시)

일자	재해자	공사명	사고원인 및 조치내용
00.00.00	000/00세	000	000

【제출서류】 1. 업체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서류】 2. 업체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제출서류 1

업체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별표 1] 긴급한 소규모 공사 범위

긴급한 소규모 공사 범위

긴급사유		세부내용	비고
민원 관리	수질 민원	· 적수, 이물질, 냄새 등 수질민원 해결 - 문제관로 개대체, 이토밸브 및 필터 설치 등	
	공급 민원	· 밸브고장, 동결 등 불출수, 저수압민원 해결 - 관로 및 밸브 등 긴급정비·설치	
안전 관리	보행자 사고	· 옥외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보행자사고 가능성 해소 - 옥외보호통 등 시설물 긴급 보수	
	교통 사고	· 도로 상 시설물 파손, 도로침하 등 교통사고 가능성 해소 - 맨홀, 철개 등 시설물 및 도로변형 등 긴급보수	
	시설물 사고	· 하천횡단관로 등 취약시설물 파손 가능성 해소 - 하천관로 보호공, 보온재 복구 등 취약시설물 긴급보수 · 타공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 해소 - 수도관 확인을 위한 확인터파기 등 시행 · 천재지변(집중강우, 한파 등) 대비 사고 방지 - 사고대비 긴급 시설물 보수 · 감압, 공기밸브 고장으로 고수압 등 원인 관로사고 방지 - 감압밸브, 공기밸브 등 긴급 점검 및 보수	
관망 관리	누수 복구	· 누수 발생 및 단수사고 - 관로 및 밸브 등 시설물 누수복구 · 갑작스런 감압밸브 고장으로 누수량 증가 - 주기적인 감압밸브 작동상태 점검(년2회 권장)	
	긴급 관망 정비	· 누수복구 시 발견되는 문제관로 긴급정비 - 다발관, 불용관, 아연도관 등 · 도수(盜水) 적발 및 중·대구경 수도미터 불감, 고장 - 도수현장 개선 및 수도미터 교체, 이설	
지자체 긴급요청		· 사유지 및 타공사 관련 관로·시설물 이설 요청 - 관로, 보호통 등 이설공사 긴급시행 · 타공사 관련 우선 노후관 교체 시행 요청 - 타공사 도로 굴착 시 노후관 교체 동시시행 등 · 폐전 및 문제관로 교체 요청 - 폐전, 문제관로 등 긴급정비 시행 · 신규급수공사 요청(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 포함시)	

[별표 2] 경고·주의 카드 발급에 따른 조치사항

경고(주의) 카드 등 발급에 따른 조치 사항

구분		판정기준	조치사항	비고
주의	1. 재시공 (부적정 공법 및 불량자재 등)	불이행 또는 고의적 회피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2. 긴급복구공사관련 민원처리	불이행 또는 고의적 회피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3. 하자보수	불이행 또는 고의적 회피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4. 고의적 정산물량 증가	작업내용과 비교시 고의적 물량 증가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경고	1. 재시공 및 하자보수	하자보수 불이행 및 고의적 회피에 따른 민원 또는 사고 발생	경고 1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2회 발생시 협약해지
	2. 고의적 복구작업 출동지연	고의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늦게 현장도착	경고 1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2회 발생시 협약해지
	3. 고의적 복구작업 지연	고의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늦게 현장도착	작업의뢰 5회 제한	2회 발생시 협약해지
	4. 건설폐기물 무단 폐기	건설폐기물 처리법규 위반	작업의뢰 5회 제한	3회 발생시 협약해지

※ 주의카드 2건 당 해당업체에 소규모 긴급공사 5회 연속으로 제한

※ 경고카드 1건 당 해당업체에 소규모 긴급공사 5회 연속으로 제한

[별표 3] 협력업체 지정취소 요건

등록취소 요건

구 분	등록취소	확인방법	비고
1.누수복구지시 불이행	1회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없이 누수복구지시에 불응한 경우	
2.복구작업 출동지연	2시간이상 2회 지연시	고의로 출동을 회피하거나 지연한 경우 - 복구 지시한 시간부터 현장도착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고의성을 판단한다.	
3.복구작업 지연	2시간 이상 2회 지연시	고의로 복구작업을 지연한 경우 -고객 단수통수시 계획된 복구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복구지연 여부를 판단한다.	
4.자격요건 상실시	1항에서 정한 협력업체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점검정비업체로서 협력업체로 지정된 후 점검정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